

1-7. 平坐

平坐 其名有五：一曰閣道，二曰燈道，三曰飛陛，四曰平坐，五曰鼓坐。

造平坐之制：其鋪作 減上屋 一跳或兩跳。其鋪作 宜用重栱及逐跳計心造作。

凡平坐鋪作 若叉柱造，卽每角 用樁料一枚，其柱根 叉於樁料之上。若纒柱造，卽每角 於柱外普拍方上 安樁料三枚。每面互見兩料，於附角料上，各別加鋪作一縫。

凡平坐鋪作 下用普拍方，厚隨材廣 或更加一掣，其廣盡所用方木。若纒柱邊造，卽於普拍方裏 用柱脚方，廣三材，厚二材，上生柱脚卯。

凡平坐 先白地立柱，謂之永定柱。柱上 安搭頭木，木上 安普拍方，方上坐 料栱。

凡平坐 四角生起，比角柱 減半。生角柱法 在柱制度內。

平坐之內 逐間下草栱 前後安地面方，以拘前後鋪作。鋪作之上 安鋪版方，用一材。四周 安鴈翅版，廣加材一倍，

송 「영조법식」 <대목작제도> 주해(5)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s

金度慶 / 고려대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朱南哲 / 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Do-Kyoung & Jo Nam-Chull

厚四分°至五分°。

平坐

平坐의 명칭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 첫째 각도(閣道), 둘째 등도(燈道), 셋째 비궤(飛陛), 네째 평좌(平坐), 다섯째 고좌(鼓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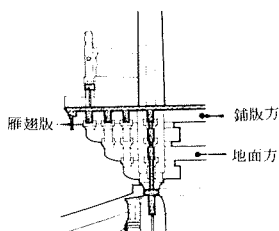
平坐)를 만드는 制度 : 상층의 鋪作을 [하층의 鋪作에 비해] 1

1) 다층건물에서 상층의 기둥을 받고 그 바닥을 형성하기 위해 下層의 鋪作이나 보 위에 짧은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栱, 栱, 보 등을 사용하여 平臺를 만드는데, 이 平臺를 '平坐'라 한다. 이 平坐의 상부에는 版을 깔아 상층의 바닥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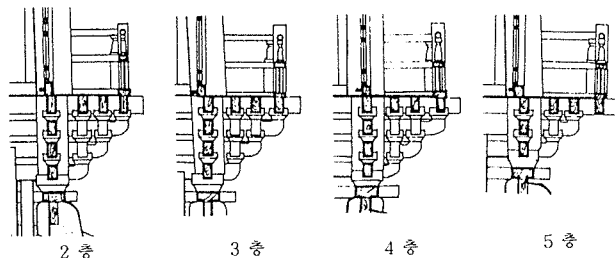
이와 같이 다층건물에서 平坐를 사용하고 있는 실례로는 天津薊縣의 獨樂寺 觀音閣(遼 統和2년, 984년)<사진.1, 도.1>,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 木塔(遼 清寧2년, 1056년)<도.2>, 山西省 大同市의 善化寺 普賢閣(遼代중엽, 1060년경 추정)<사진.2,3>, 河北省 正定縣의 隆興寺 慈氏閣<사진.4>과 轉輪藏殿(北宋代, 960~1127년)<도.3>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山西省 大同市 華嚴下寺 內部的 天宮壁藏과 같은 小木作에서도 平坐가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으며<사진.5>, 北京 房山에 있는 遼代의 雲居寺 北塔과 같은 多層塔에서도 목조건축을 모방한 平坐가 사용된 예가 있다<사진.6,7>.

그런데 宋代를 전후한 시기의 회화에서는 平坐가 다층건물이 아닌 地面이나 城壁, 또는 水上에 사용된 경우도 있다. 地面에 平坐를 구성한 예는 宋代의 「水殿招涼圖」와 「明皇避暑圖」, 「焚香祝聖圖」에서 볼 수 있으며, 성벽에 平坐를 구성한 예는 宋代의 「清明上河圖」와 「黃鶴樓圖」에서, 水面에 平坐를 구성한 예는 元代的 「金明池圖」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平坐는 다층건물 뿐 아니라 地面이나 城壁 또는 水上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다층건물에 사용된 平坐의 실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중국 외에 일본에서도 10세기말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奈良 法隆寺 西院의 鍾樓와 같이 多層건물에 平坐를 사용한 경우가 남아 있다<사진.8>.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平坐를 사용한 건물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日本 大恩寺와 西福寺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觀經序品變相圖에서 重層樓閣에 사용된 平坐를 볼 수 있으며<도.4,5>, 역시 일본 西福寺에 소장되어 있는 觀經變相圖에서 水上의 基壇 위에 平坐를 형성하여 건물의 바닥을 삼고 있는 예도 있다<도.6>. 이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고려시대에는 平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구성은 현존하는 중국의 遼, 宋, 金代에 사용된 平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된다.



<도. 1> 天津 蘇縣 獨樂寺 觀音閣의 平坐 (출처 :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81)



<도. 2> 山西 應縣 佛宮寺 木塔의 平坐 (출처 :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86)

출목 혹은 2출목 줄이고²⁾, 각 출목선상은 重栱을 사용한 計心造로 한다³⁾.

平坐鋪作이 叉柱造⁴⁾인 경우, 건물의 각 모서리에는 주두 1개씩을 사용하며, 이 주두 위에 [상층의] 기둥밑둥(柱根)을 결구한다. 纏柱造(전주조)⁵⁾인 경우, 건물의 각 모서리마다 普拍方⁶⁾ 위에는 기둥선

과 그 양 옆에 주두 3개씩을 놓는다. [건물의 각] 面마다 두개의 주두가 서로 마주 보도록 한 附角刹⁷⁾위에는 각 각 별도의 鋪作 1縫을 더한다.

平坐鋪作은 아래에 普拍方⁸⁾을 두는데, 그 높이는 材의 높이로 하거나 여기에 1契를 더한다. 그 너비는 사용되는 方木의 폭으로 한다. 纏柱邊造인

2) 이와 같이 상층 平坐鋪作的 출목수를 하층 平坐鋪作的 출목수보다 적게 한 경우는 3층 이상의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현존하는 목조건축으로는 山西省 應縣의 佛宮寺 木塔에서만 그 예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2,3,4층의 平坐鋪作을 외3출목으로 하고, 5층의 平坐鋪作만을 외2출목으로 하여 하층의 출목수보다 적게 하고 있다<도.2>.

3) 이와 관련하여 本書의 <總鋪作次序>條에서는 “平坐에는 卷頭만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昂>條에서는 上昂에 대하여 “上昂은 內出目이나 平坐鋪作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總鋪作次序>條의 내용과 모순된다.

이 외에 본 항목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平坐鋪作的 특징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는 앞의 1-2. <栱>條가 있다.

4) 平坐에서 상층의 기둥선이 平坐의 기둥선과 일치하는 경우를 叉柱造라 한다., 이 경우 상층의 기둥은 그 하부에 十字형의 홈(柱脚卯)을 파서 平坐鋪作的 주두와 결구시킨다<도.7>. 河北省 正定縣의 隆興寺 轉輪藏殿<도.3>, 天津 薊縣의 獨樂寺 觀音閣<도.1>, 山西省 大同市の 善化寺 普賢閣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보이는 平坐는 叉柱造의 구성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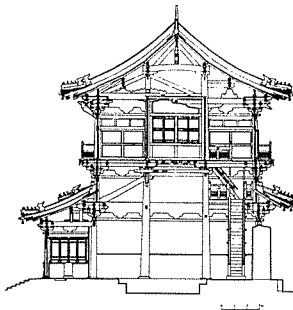
5) 상층의 기둥선과 平坐의 기둥선이 일치하지 않고 상층의 기둥이 平坐의 기둥보다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를 纏柱造라 한다. 이때 상층의 기둥은 平坐기둥이나 平坐鋪作的 상부가 아닌 柱脚方위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鬚기둥 상부의 주두 양 옆으로 하나씩의 주두를 두어 여기에 鋪作 1縫을 추가하여 圭포를 구성한다<도.8>. 그러나 현존하는 중국의 목조건축에서 纏柱造로 구성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佛宮寺 木塔이나 獨樂寺 觀音閣 등의 경우는 상층으로 올라갈 수록 건물의 폭이 체감되고 있으나, 이는 상층의 기둥이 平坐의 기둥보다 내부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平坐의 기둥을 하층의 기둥보다 내부에 위치시켜 건물의 폭을 체감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平坐를 纏柱造로 구성한 것은 아니다.

6) 다음의 註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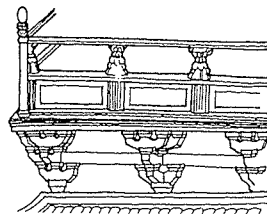
7) 平坐가 纏柱造로 된 경우에 鬚기둥 상부의 평방위에 주두 양 옆으로 하나씩의 주두를 추가하여 놓는데 이를 附角(櫺)材라 한다<도.8>.

8) 기둥 상부를 연결하는 창방(闌額) 위에 놓이는 방형의 부재로 鋪作的 하중을 받아 그 하중을 창방과 기둥에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한다<도.7,8>. 木 『營造法式』에서는 이 普拍方의 단면을 높이 1材(10分°) 또는 1材1契(21分°)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너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清代에는 普拍方을 ‘平板枋’이라 하였으며, 우리나라 건축의 ‘平枋’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普拍方’을 ‘평방’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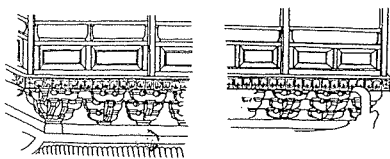
창방위에 평방을 사용할 수법은 山西省 榆次縣의 雨華宮(宋 大中 祥符元年, 1008년)에서 처음으로 보이고 있으나, 金과 南宋이후(약 1150년)가 되어서야 모든 목조건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梁思成著, 韓東湊·梁錫永 譯, 『圖說 中國建築史』, p.103, 서울:세진사, 1992). 그런데 창방과 평방이 이루는 단면은 초기에는 ‘T’자형이었으나, 점차 평방의 폭이 줄어들어 清代 工部의 『工程做法則例』에서는 ‘H’자형의 단면을 이루게 되는 변화를 거친다. 따라서 평방과 창방이 이루는 단면형은 건물의 시대성을 반영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도.9>. 이와 더불어 평방이 처음으로 출현시키는 柱心에만 공포를 구성하는 소위 柱心包係에서 柱間에도 공포를 구성하는 소위의 多包系로 발전해 가는 공포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평방은 柱心包係를 위주로 하는 唐代까지의 건물에서는 사용되지 않다가 점차 柱間에도 공포를 사용하는 多包系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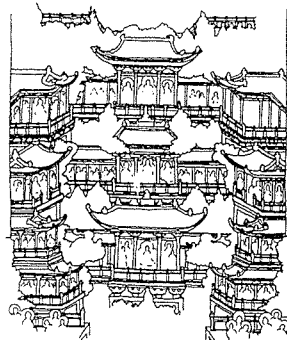
<도. 3> 河北 正定 隆興寺 轉輪藏殿 단면도
(출처 : 『中國古代建築技術史』, p.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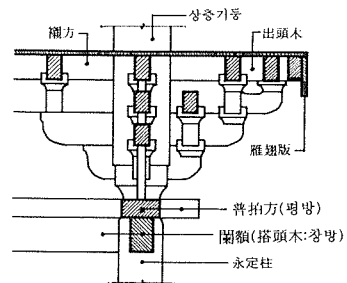
<도. 4> 日本 大恩寺 소장 高麗觀經序品變相圖의 平坐



<도. 5> 日本 大恩寺 소장 高麗觀經序品變相圖의 平坐



<도. 6> 日本 西福寺 소장 高麗觀經變相圖



<도. 7> 叉柱造의 예(河北 正定 隆興寺 轉輪藏殿)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譯 卷上』, p.144)

造梁之制有五：

一曰 檐椽：

如四椽及五椽椽；若四鋪作以上至八鋪作，并廣兩材兩掣，草椽 廣三材。

如六椽至八椽以上椽；若四鋪作至八鋪作，廣四材，草椽同。

二曰 乳椽：若對大梁用者，與大梁 廣同。三椽椽，若四鋪作·五鋪作，廣兩材一掣，草椽廣兩材，六鋪作以上 廣兩材兩掣，草椽同。

三曰 筓牽；若四鋪作至八鋪作出跳 廣兩材，如不出跳 并不過一材一掣。草筓牽 準此。

四曰 平梁；若四鋪作·五鋪作，廣加材一倍。六鋪作以上 廣兩材一掣。

五曰 廳堂梁椽；五椽·四椽 廣不過兩材一掣，三椽廣兩材。餘屋 量椽數 準此法 加減。

凡梁之大小，各隨其廣分 爲三分，以二分 爲厚。凡方木小，須繳貼令大。如方木大，不得裁減，卽於廣厚加之。如礙椽及替木，卽於梁上角開抱轉口。若直梁狹，卽兩面 安椽版。如月梁狹，卽上加繳背，下貼兩頰，不得刻剜梁面。

造月梁之制；

明椽 其廣四十二分°。如徹上明造 其乳椽·三椽椽各廣四十二分°，四椽椽 廣五十分°，五椽椽 廣五十五分°，六椽椽以上 其廣并至六十分止。梁首 謂出跳者 不以大小從，下高二十一分°。其上餘材，白料裏平之上，隨其高 勻分作六分，其上以六瓣卷殺，每瓣長十分°。其梁下 當中顚六分°。自料心下 量三十八分° 爲斜項。如下兩跳者 長六十八分°。斜項外，其下起顚，以六瓣卷殺，每瓣長十分°，第六瓣盡處下顚五五分°。去三分°，留二分° 作琴面。自第六瓣盡處 漸起至心，又加高一°，令顚勢圓和。梁尾 謂入柱者，上背下顚，皆以五瓣卷殺。餘并同梁首之制。

梁底面 厚二十五分°。其項 入料口處 厚十分°。料口外兩肩 各以四瓣卷殺，每瓣長十分°。

若平梁，四椽·六椽上用者，其廣三十五分°，如八椽至十椽上用者，其廣四十二分°。不以大小從，下高二十五分°。背上·下顚 皆以四瓣卷殺，兩頭 并同，其下第四瓣盡處 顚四分°，去兩分°，留一分° 作琴面。自第四瓣盡處 漸起至心，又加高一°。餘并同月梁之制。

若筓牽，其廣三十五分°。不以大小從 下高一十五分°，上至料底。牽首上 以六瓣卷殺，每瓣長八分°；下同。牽尾上 以五瓣。其下顚 前後 各以三瓣。斜項同月梁法。顚內去留 同平梁法。

凡屋內徹上明造者，梁頭相疊處 須隨舉勢高 下用駝峯。其駝峯 長加高一倍，厚一材。料下兩肩 或作入瓣，或作出瓣，或圓訛兩肩，兩頭 卷尖。梁頭安替木處 并作隱料，兩頭 造斗頭或切几頭，切几頭 刻梁上角 作一入瓣，與令栱或欂櫨 相交。

凡屋內 若施平棊，平闇 亦同，在大梁之上。平棊之上 又施草椽，乳椽之上 亦施草椽，并在壓槽方之上。壓槽方 在柱頭方之上。其草椽 長同下梁，直至椽檐方止。若在兩面，則安丁椽，丁椽之上 別安抹角椽，與草椽 相交。

凡角梁之下，又施隱襯角椽，在明梁之上，外至椽檐方，內至角後椽項；長以兩椽材斜長加之。

凡襯方頭，施之於梁背斗頭之上，其廣厚同材。前至椽檐方，後至昂背或平棊方。如無鋪作，卽至托脚木止。若騎槽，卽前後 各隧跳，與方·栱 相交，開子廡以壓料上。

凡平棊之上，須隨椽 用方木及矮柱 敦栝，隨宜枝椽固濟，并在草椽之上。凡明梁只閣平棊，草椽在上承屋蓋之重。

凡平棊方 在梁背上，其廣厚并如材，長隨間廣。每架下 安平棊方一道。平闇同。又隨架 安椽以遮版縫。其椽 若殿宇，廣二寸五分，厚一寸五分；餘屋 廣二寸二分，厚一寸二分。如材小，卽隨宜加減。絞井口并隨補間，令縱橫分布方正。若用峻脚，卽於四闌內安版貼華。如平闇，卽安峻脚椽，廣厚并與平闇椽同。

梁

梁의 명칭에는 세가지가 있다. : 첫째는 양(梁), 둘째는 망유(宗樑), 세째 려(欂)이다.

梁18)을 만드는 制度는 다섯가지가 있다19).

1) 檐椽20) :

18) '梁'은 '椽'이라고도 하며, 우리말의 '보(양·樑)'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보'라고 번역하도록 한다.

19)本書에서는 보를 檐椽, 乳椽, 筓牽, 平梁, 廳堂梁椽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다섯가지 중에서 檐椽, 乳椽, 筓牽, 平梁은 보가 사용된 위치에 따른 분류인 반면<도.10, 11>, 廳堂梁椽은 건물의 종류에 따른 보의 분류로 볼 수 있다. 또한 廳堂梁椽은本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그 분류기준에 있어서도 앞의 네가지 보와 관련성이 없어 많은 의문을 지닌다. 廳堂梁椽에 대해서는 註33) 참조.

20) 지붕의 하중을 받는 큰 보로 木 항목에서는 4椽椽에서 8椽椽까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뒤에서 平梁을 언급하면서 '10椽'이라는 말이 나오고, 卷第三十과 三十一의 <大木作制度圖樣>에서도 10椽椽으로 된 경우가 圖示되어 있다('×椽椽'에 대해서는 다음의 주)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 예가 드물기는 하지만 2椽椽 또는 3椽椽으로 된 경우도 있다. 이 檐椽은 우리나라 건축의 '大樑', '中樑'을 아우르는 용어이지만, 최상층에 위치한 보, 즉 우리나라의 '宗樑'은 '平梁(2椽椽)'이라 하여 檐椽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구분하고 있다.

4椽 및 5椽²¹⁾은 4鋪作 이상 8鋪作까지²²⁾ 모두 높이를 2材2契로 하며²³⁾, 草椽²⁴⁾으로 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3材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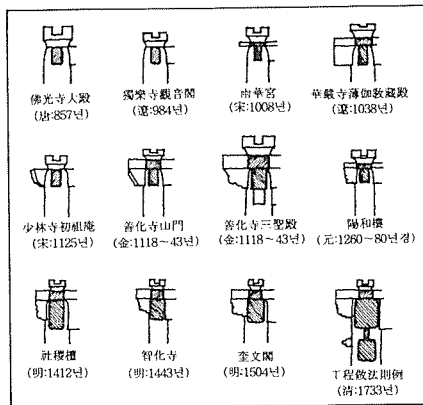
6椽에서 8椽 이상의 椽은 4鋪作에서 8鋪作까지 모두 높이를 4材로 하며, 草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다.

2) 乳椽²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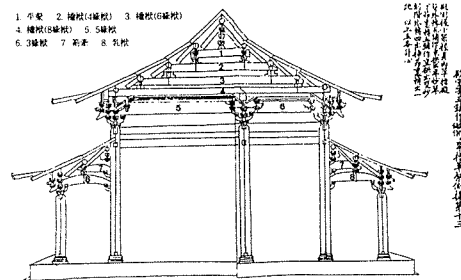
단약 大樑²⁶⁾과 마주 대하도록 사용하는 경우에는 大樑과 높이를 같게 한다.

3椽椽은 4鋪作·5鋪作인 경우 높이를 2材1契로 하며, 草椽인 경우에는 높이를 2材로 한다. 6鋪作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를 2材2契로 하는데, 草椽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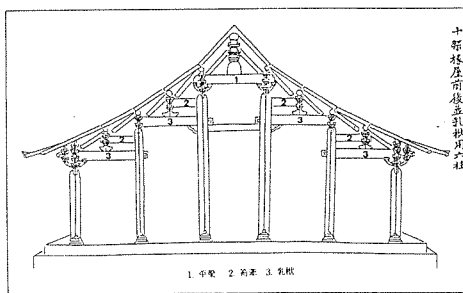
- 21) 4椽은 4개의 서까래, 즉 보 위에 걸린 도리의 수가 5개로 도리 사이의 칸 수가 4개가 되는 보이며, 5椽은 5개의 서까래, 즉 보 위에 걸린 도리의 수가 6개로 도리 사이의 칸 수가 5개가 되는 보이다. 여기에서 '×椽椽'의 '椽'은 서까래의 架數를 말하는 것이다. 즉 1椽은 인접한 도리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건축에서는 그 보가 받고 있는 서까래의 架數를 기준으로 하여 보의 길이를 나타낸다(<도.10.11> 참조). 즉 宋『營造法式』에서는 보를 그 보가 받고 있는 서까래의 架數를 세어 '×椽椽', '×架椽'이라 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清代에도 계속되어 清工部 <工程做法則例>에서는 이를 "×架梁" 또는 "×步梁"이라 하였다. 그러나 清式에서 '步'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雙步梁'은 宋式의 乳椽에 해당하고 '三步梁'은 宋式의 3椽椽, '單步梁'은 簡牽에 해당한다.
- 22) 즉 鋪作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의 檐椽을 말하는 것이다.
- 23) 여기에서 檐椽의 높이는 뒤의 '造月梁之制'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의 높이와는 차이가 있다(뒤의 <表.1> 참조). 따라서 이하 檐椽에서 廳堂梁椽까지 보의 종류를 언급하면서 보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明椽, 특히 直梁으로 하는 경우의 보의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문의 내용에서 보의 높이를 규정한 뒤에 다시 草椽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草椽의 개념은 月梁보다는 明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섯가지 보의 종류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우선 외부에 노출되는 明椽이지만 月梁으로 가공하지 않고 直梁으로 하는 경우의 보의 높이를 규정한 것이고, 이 뒤에 草椽으로 하는 경우의 보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4) 平基, 平閣 상부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의 보는 장식적인 처리를 하지 않는데, 이 장식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보를 '草椽'이라 한다.
- 25) 外陳柱와 內陣柱 사이를 연결하는 보로 한국건축의 退椽에 해당하는 보로 볼 수 있다. 卷第三十一의 <大木作制度圖樣下>에는 1椽椽~3椽椽의 乳椽이 圖示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2椽椽으로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清式에서는 乳椽을 '雙步梁'이라 하였다. 乳椽은 草椽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천장(平閣 또는 平基) 아래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므로 장식적인 처리를 한 月梁으로 한다. 乳椽의 보머리는 外陳柱 위에 놓인 鋪作위에 놓인다. 그러나 乳椽의 뒷쪽은 內陣柱의 몸체에 삽입되는 경우와 기둥위의 鋪作위에 올려놓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보의 후미가 놓이는 위치가 다른 것은 內陣柱의 높이와 관계된다. 즉 內陣柱는 外陳柱와 같은 높이로 된 경우(이러한 구성을 卷第三十一의 <大木作制度圖樣下>에서는 '殿堂'이라 하였다.)와 外陳柱보다 높게 구성하는 경우(이러한 구성을 卷第三十一의 <大木作制度圖樣下>에서는 '廳堂'이라 하였다.)가 있다(<도.11>). 전자의 경우 內陣柱 위에 鋪作을 구성하여 건물 높이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때 乳椽의 후미는 이 鋪作위에 놓이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內陣柱가 外陳柱보다 높으므로 乳椽의 후미는 당연히 內陣柱 중간에 삽입된다.
- 26) 원문에는 '大角梁'이라 하였는데, 大角梁은 우리나라 건축의 추녀에 해당하는 부재로 乳椽과의 관련성이 적다. 또한 바로 다음의 문장에 '大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 원문의 '大角梁'은 '大梁'의 誤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大梁'이라고 고쳐 게재하였다. '大梁'은 檐椽중에서 가장 아래에 사용된 것, 즉 우리나라 건축에서의 '大樑'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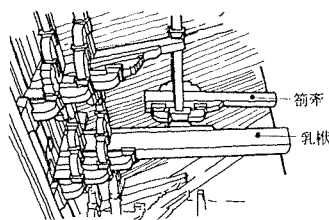
<도. 9> 平枋(普拍)과 昌枋(昌額)의 단면 변화 (출처 : 梁思成, 『圖說 中國建築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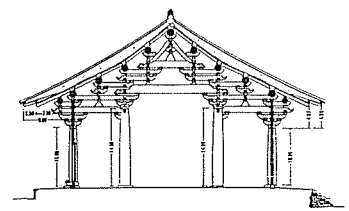
<도.10> 殿堂형 건물의 단면 예 (출처 : 李誠, 『營造法式』 卷第三十一)



<도.11> 殿堂형 건물의 단면 예 (출처 : 李誠, 『營造法式』 卷第三十一)



<도.12> 出跳箭栿의 예(山西 大同 善化寺 三聖殿)(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譯 卷上』, p.142)



<도.13> 浮石寺 無量壽殿의 架構 (출처 :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p.230)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筓牽²⁷⁾ :

4鋪作에서 8鋪作까지 出跳한 경우²⁸⁾에는 높이를 兩材로 하고, 出跳하지 않은 경우²⁹⁾에는 1材1契를 넘지 못한다. 草筓牽³⁰⁾도 이에 준한다.

4) 平梁³¹⁾ :

4鋪作·5鋪作인 경우 높이는 材의 1倍를 더한다³²⁾. 6鋪作 이상에서는 높이를 2材1契로 한다.

5) 廳堂梁枅³³⁾ :

5椽·4椽은 높이를 2材1契가 넘지 못하게 하고, 3

椽은 높이를 2材로 한다. 기타 건물은 서까래의 數를 헤아려 이에 준하여 加減하도록 한다.

보의 크기는 각각 그 높이를 3等分하여 그 2等分을 너비로 한다³⁴⁾. 方木이 작은 경우에는 [부재를] 덧대어 [보의 단면을] 크게 한다. 方木이 크지만 裁減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높이와 너비에 이를 더한다. 만약 [보에] 도리나 替木³⁵⁾을 결구하는 경우에는 보의 상면 모서리에 抱樑口³⁶⁾를 판다. 直梁³⁷⁾이 좁은 경우에는 [보의] 兩

27) 보머리는 乳楸위에 놓인 枋이나 駝峯위에 놓이고, 후미는 대부분 內障高柱에 삼입되는 보의 일종이다<도.10, 11>. 지붕의 하중은 부담하지 않고, 筓牽머리의 枋이나 駝峯이 이 위에 놓이는 도리의 하중을 받아 乳楸에 전달하고, 筓牽은 부재 사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筓牽의 머리가 柱頭鋪作위에 놓이는 경우를 '出跳筓牽'이라 하며<도.12>, 駝峯위에 놓이는 경우를 '不出跳筓牽'이라 한다. 길이는 1椽架 혹은 2椽架로 하지만 대부분 1椽架이다. 清代에는 '單步梁'이라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浮石寺 無量壽殿에서 筓牽과 비슷한 부재가 사용되고 있는데<도.13>, 이를 '草枋'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은 통일된 용어라 할 수 없다. 또한 修德寺 大雄殿과 江陵 客舍門 등에서는 이 筓牽에 해당하는 부재가 변화된 형식으로 보이는 牛尾椽이 사용되고 있다<사진.9>. 中國에서도 元代에 건축된 浙江 武義 延福寺大殿에서 이러한 牛尾椽 형식의 筓牽이 사용되고 있어 주목된다<도.14>.

28) 여기에서의 '出跳'는 출목의 의미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 原文의 의미를 살려 出跳라 번역하였다. 筓牽머리가 乳楸 상부의 枋과 결구되는 경우, 즉 出跳筓牽을 말한다<도.12>.

29) 筓牽머리가 枋이 아니라, 예를들어 乳楸위의 駝峯위에 결구되는 것과 같은 경우, 즉 不出跳筓牽을 말한다.

30) 천장 상부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장식적 가공은 하지 않은 筓牽을 말한다.

31) 목조가구의 최상층에 놓이는 보로 길이는 2椽架이다<도.10, 11>. 平梁의 상부 중앙에는 동자대공(蜀柱)을 세워 종도리(脊樑)를 받는다. 草楸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草楸으로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直梁의 형식으로 한다. 清代에는 '太平樑'이라 불렀는데, 우리나라의 '宗樑'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32) 즉 2材=30°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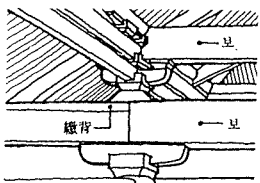
33) 앞에서 언급한 네 종류의 보가 사용된 위치에 따른 분류이지만, 廳堂梁楸은 보가 사용된 위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건물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므로 분류기준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本書의 설명만으로는 廳堂梁楸이 어떠한 유형의 보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본 항목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보아 廳堂梁楸은 廳堂에 사용되는 보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앞에 설명된 네 종류의 보에 대한 치수 규정은 이들 보가 殿堂에 사용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4) 이 규정은 보의 단면을 높이:너비가 3:2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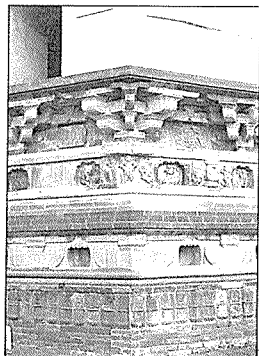
35) 굴도리가 수평으로 연속하여 접하게 되는 부분을 받는 짧은 方形단면의 부재로, 일반적으로 榑위에 놓이며, 양단부는 교두형으로 하여 접차와 비슷한 형태로 한다. 우리나라 건축의 '단장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6) 보머리에 도리나 替木을 얹어 놓는 경우, 보의 상부에 도리나 替木을 받아 이것이 구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내는 부분을 抱樑口라 한다.

37) 直梁은 月梁과 같이 장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직선형으로 처리한 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마감은 깔끔하게 하여 마감을 하지 않고 대강 치목하여 사용하는 草楸과는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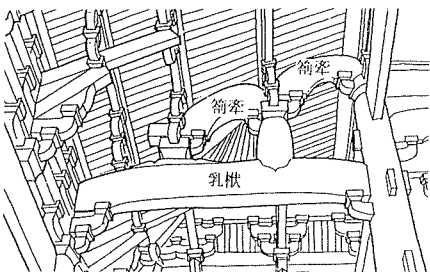
<도.15> 작백의 예(河北 新城 開善寺 大殿)
(출처 : 徐伯安, 廓黛姪, 『宋「營造法式」述語匯譯』,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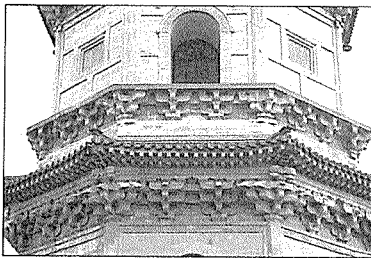
北京 房山 雲居寺 北塔의 1層 塔身下



日本 奈良 法隆寺 西院 鐘樓의 平坐鋪作



<도.14> 浙江 武義 延福寺 大殿의 筓牽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譯 卷上』, p.148)



北京 房山 雲居寺 北塔의 2層 塔身下 平坐



修德寺 大雄殿의 牛尾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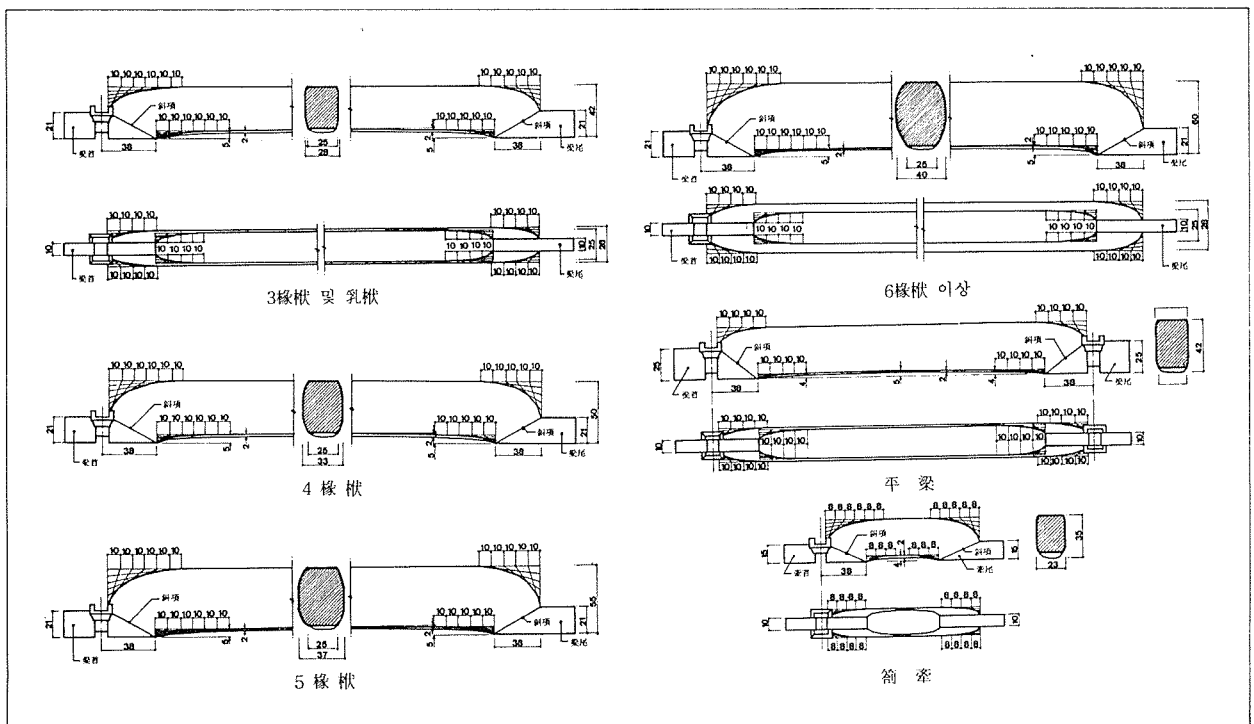
面에 榑椽版³⁸⁾을 설치한다. 月梁이 좁은 경우에는 상부에 繳背³⁹⁾를 더하고 下部의 兩面에는 兩頰을 붙이되, 보의 양 측면을 깎아내지 않도록 한다.

月梁⁴⁰⁾을 만드는 方法 :

明楸⁴¹⁾은 높이를 42分°으로 한다. 徹上明造⁴²⁾인 경우, 乳楸과 3椽楸는 높이를 42分°으로 하고, 4椽楸는 높이를 50分°, 5椽楸는 높이를 55分°, 6椽楸 이상은 높이를 60分°까지로 한다. 보머리(梁首⁴³⁾ - 鋪作밖으로 보가 돌출한 부분을 말한다. - 는 보의 [단면] 크기와 관계없이 아래에서 높이 21分°이 되는 부분이다. 그 위쪽의 나머지 부분은 料안쪽의 평평한 곳⁴⁴⁾으로부터 그 높이를 6等分하

여 6瓣卷殺하는데, 每 瓣의 길이는 10分°으로 한다. 보 下面의 중앙부는 6分°을 오목하게 한다. 料의 중심 아래에서 38分°이 되는 부분까지를 斜項⁴⁵⁾으로 한다. [이 때] 下部가 2출목인 경우에는 [斜項의] 길이를 66分°으로 한다. 斜項의 바깥으로 그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목하도록 6瓣卷殺하는데, 每 瓣의 길이는 10分°으로 한다. 6瓣卷殺가 끝나는 곳은 하부의 5分°을 오목하게 한다. [이 5分°중] 3分°은 깎아내고 2分°은 남겨서 琴面으로 한다. 또한 6瓣이 끝난 곳에서부터 보의 중심을 향해 다시 오목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높이 1分°을 더하여 오목한 선을 부드럽게 한다. 梁尾⁴⁶⁾ - [보가] 기둥에 삽입되는 부분을 말한다. - 는 상

- 38) 보의 도리의 너비가 규정보다 좁은 경우 이들의 너비를 규정된 크기로 만들기 위해 덧대어 사용하는 얇은 판을 榑椽板이라 한다.
- 39) 보의 단면 높이가 작은 경우 그 상면에 덧대어 사용하는 부재이다<도.15>.
- 40) '月梁'은 앞에서 언급한 보의 종류와는 관계 없이 보의 가공 有無에 따른 명칭으로, 보가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장식적인 처리를 한 것이다. 즉 보의 상면은 양단을 둥글게 깎아 중앙부가 위로 만곡된 형태로 하고, 하부는 반대로 중앙부를 깎아내어 위로 만곡된 형태로 한다<도.16>. 이와 같이 중앙부가 위로 만곡되어 초승달 모양과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月梁'이라 한다. 일반적을 천장 위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草楸인 경우는 月梁으로 가공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는 明楸인 경우에만 月梁으로 가공한다. 즉 月梁은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 아래에 위치하는데, 이 때의 月梁은 천장의 하중을 부담할 뿐 상부의 하중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에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徹上明造)에 月梁은 지붕의 하중을 부담한다.
- 41)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보를 '明楸'이라 한다. 즉 천장을 가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고, 천장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천장 아래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보를 明楸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明楸은 일반적으로 장식적인 처리를 한 月梁으로 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草楸과 상대되는 개념의 명칭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明楸은 천장을 가설할 때, 그 아래에 노출되는 경우의 보만을 지칭하고 있다.
- 42) 실내에 천장(平梁 또는 平閣)을 설치하지 않아 보, 도리, 서까래 등의 상부구조가 완전히 노출되도록 한 것을 '徹上明造'라 하며, '徹上露明造' 또는 '露明造'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연등천장'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43) 보의 양단을 '梁頭'라 한다. 梁頭는 다른 부재와의 결구를 위해 폭이 좁아지는데 이 부분을 '項'이라 한다. 梁頭는 '梁首'와 '梁尾'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梁首는 기둥 상부의 料楸와 결구되어 외부로 돌출하는 쪽을 말한다. 梁首의 반대쪽이 기둥에 삽입되는 경우(料楸와 결구되는 경우도 있다.) 그 梁頭를 梁尾라 하여 梁首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높이는 21分°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 단부의 단면을 줄여 足材로 함으로써 料楸과의 결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도.16>. 우리말의 '보머리'는 本書의 '梁頭'보다는 '梁首'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本書의 梁頭를 우리말로 '보머리'로 옮겨도 文義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본 번역문에서도 文義에 벗어나지 않는 한 原文의 '梁頭', '梁首'를 모두 '보머리'로 번역하였다.
- 44) 주두나 소로의 '平' 상면을 말한다.



<도.16> 각종 月梁

부의 볼록한 부분과 아래의 오목한 부분 모두 5瓣으로 卷殺한다. 나머지는 보머리를 만드는 방법과 같다.

보 아랫면은 너비를 25分°으로 한다⁴⁷⁾. 그 項 - 料口에 들어가는 부분 - 은 너비를 10分°으로 한다. 料口밖의 [보] 양면은 4瓣으로 卷殺하며 每瓣의 길이는 10分°으로 한다.

平梁⁴⁸⁾인 경우, 4椽·6椽위에서는 그 높이를 35分°으로 하고, 8椽 내지 10椽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42分°으로 한다. 보의 크기에 관계 없이 아래에서부터 높이 25分°까지를 [보머리로] 삼는다⁴⁹⁾. 上面의 볼록한 부분과 下面의 오목한 부분은 모두 4瓣으로 卷殺한다. [보의] 양쪽 머리는 [이와] 동일하게 [4瓣으로 卷殺]한다. 그 아래 第4瓣이 끝나는 곳은 4分°을 오목하게 하는데, 2分°을 제거하고 2分°을 남겨서⁵⁰⁾ 琴面을 만든다. 또한 第4瓣이 끝나는 곳으로부터 보의 중심에 이르

기까지 다시 점차 볼록하게 하여 1分°을 더한다⁵¹⁾. 이 외에는 모두 月梁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⁵²⁾.

筭牽⁵³⁾인 경우에는 높이를 35分°으로 한다. [보의] 크기에 관계없이 아래에서부터 높이 15分°을 筭牽머리로 하며⁵⁴⁾, 상부는 料 아래에 이른다. 筭牽머리(牽首)의 상부는 6瓣으로 卷殺하며, 每瓣의 길이는 8分°으로 한다. 이하도 같다⁵⁵⁾. 筭牽 후미(牽尾)의 상부는 5瓣으로 [卷殺]한다. [筭牽] 下面의 오목한 부분은 前後를 각각 3瓣으로 卷殺한다. 斜項은 月梁을 만드는 방법과 같으며, 오목한 부분의 남기고 제거하는 방법은 平梁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

실내가 徹上明造인 경우 보머리가 놓이는 곳에는 지붕물매(擧勢)⁵⁶⁾의 높낮이에 따라 [보머리] 아래에 駝峯⁵⁷⁾을 설치한다. 駝峯은 길이를 높이의 2배

45) 보를 料枋과 결구하거나 기둥에 끼우기 위해 보 단부의 단면을 足材로 줄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項'이라 하며, 項이 梁身과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경사진 선을 斜項이라 한다<도.16>.

46) 보가 料枋상부에서 결구되는 보머리의 반대쪽으로 보가 기둥에 삽입되는 부분이다. 이하 梁尾는 '보후미'라 번역한다<도.16>.

47) 여기에서는 보의 하부 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부의 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의 전체 폭은 높이의 2/3로 한다고 앞에서 규정하고 있다.

48) 여기에서의 平梁은 앞에서와는 달리 平梁을 月梁으로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49) 원문에서는 "不以大小從, 下高二十分"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앞의 "梁首 不以大小從, 下高二十一分"과 같이 보의 하부에서 높이 25分°까지를 보머리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도.16>. 이를 21分°의 誤記로 보는 경우, 뒤에 나오는 "餘并同月梁之制"라는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梁思成은 이를 21分°이라 하고 있는데(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258, 大木作制度圖樣19),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생각된다.

50) 原文에는 "留一分"이라고 하였으나, 1分°으로 하는 경우에는 "去二分"과 합하여 4分°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의 "留一分"에서 "一分"은 "二分"의 誤記인 듯 하다. 따라서 본 번역문에서는 文義에 맞도록 2分°으로 고쳐 記載하였다<도.16>.

51) 따라서 중앙부분 오목한 부분의 전체 높이는 5分°이 된다<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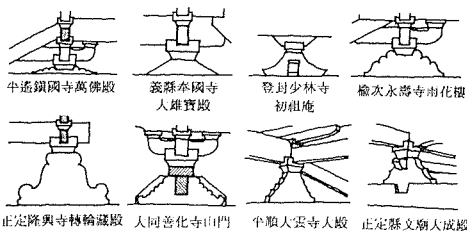
52) 이 문단으로 인하여 梁思成은 "천장의 유무와 노출에 관계 없이 平梁은 일률적으로 月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듯 하다(『전계서』, p.149). 그러나 原文의 <大木作制度圖樣下>에는 平梁을 直梁형식으로 한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또한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平梁의 규정은 平梁을 月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며, 앞서 보의 종류를 언급하면서 기록한 平梁의 규정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平梁을 일률적으로 月梁으로 한다는 梁思成의 견해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53) 여기에서는 筭牽을 月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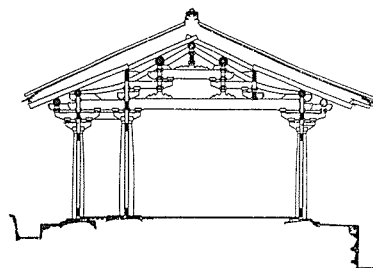
54) 원문에서는 "不以大小從, 下高一十五分"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平梁에서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앞의 "梁首 不以大小從, 下高二十一分"과 같이 보의 하부에서 높이 15分°(즉 1材)까지를 筭牽머리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바로 위에 연결되는 "上至料底"라는 문장과의 뜻이 통하게 된다<도.16>. 梁思成은 여기에서도 筭牽머리의 높이를 21分°으로 圖示하고 있다(『전계서』, p.258).

55) 이하도 每瓣의 길이는 8分°이다<도.16>.

56) 지붕의 물매에 따라 도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을 '擧'라 하는데, 여기에서의 '擧勢'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擧勢'가 우리말의 '지붕물매'에 매우 가까운 의미이므로 '지붕물매'라는 말로 번역하였다. 擧勢에 대해서는 뒤의 <擧折>條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도.17> 駝峯의 다양한 예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釋 卷上』, p.149)



<도.18> 鳳停寺 極樂殿 중단면
(출처 :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p.225)

로 하고, 두께는 1材(58)로 한다. 料 아래의 兩肩(59)은 入瓣(60) 또는 出瓣(61)으로 하며, 혹은 양 어깨부분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고 兩頭(62)를 뾰족하게 한다. 보머리에서 替木이 없이는 부분에는 모두 隱料를 만들며, [보의] 양쪽 단부는 쇠두 혹은 切几頭(63) - 切几頭는 보의 상부 모서리를 깎아서 1入瓣을 새긴다. - 로 하며, 舍栱 혹은 襜間(64)과 직교하여 결구한다.

실내에 平基(65)를 설치하는 경우(66) - 平闇(67)을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에 [平基는] 大梁 위에 설치한다. 平基위에는 다시 草栱을 두고, 乳栱위에도 역시 草栱을 두는데, [이들 草栱은] 모두 壓槽方(68) 위에 위치한다. 壓槽方은 柱頭方(69) 위에 위치한다. 이 草栱의 길이는 아래에 위치한 보의 길이와 같으며, [草栱의 양 끝은] 정확히 檼檐方에서 끝나도록 한다. [건물의] 양 측면에서는 丁栱(70)을 설치하고, 丁栱위에 별도로 抹角栱(71)을 두어 草栱과 교차하도록 한다.

角梁(72) 아래에는 또 隱襜角栱(73)을 설치하는데, [隱襜角栱은] 明梁위에 위치하며 외부로는 檼檐方, 내부로는 角後栱項에 이르도록 한다(74). 길이는 2椽材에 斜長을 더한 것으로 한다.

襜方頭(75)는 보 상면의 쇠두위에 설치하는데, 높이와 두께는 材와 동일하다. 앞쪽으로는 檼檐方, 뒷쪽으로는 昂의 상면(昂背) 혹은 平基方(76)에 이르도록 한다. 鋪作이 없는 경우에는 托脚木(77)까지 이르도록 한다. 柱心線上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前後 모두 각각 출목에 따라 方, 栱과 더불어 직교하는데, 여기에 子廳을 파서 料의 상부를 누르도록 한다.

平基 상부에는 도리와 보에 맞추어 方木 및 矮柱(78)를 사용하여(79) 적당하게 지탱함으로써 견고하고 고르게 하는데, 모두 草栱위에 위치한다. 明梁은 단지 平基의 하중을 받을 뿐이며, 草栱이 상부 지붕(屋蓋)의 하중을 받는다.

平基方(80)은 보의 상면에 위치하는데, 그 단면의

57) 보위에 보 또는 도리를 올려놓는 경우 이들 상하 수평재 사이의 높이차를 조절하면서 상부 수평재의 하중을 하부 수평재에 전달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를 말하는데, 아래에 위치한 보의 상면에 놓여 상부에 위치한 보의 보머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부재의 형태를 낙타등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駝峯'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清代에는 '柁墩'이라고 불렀으며, 때로는 그 형태를 荷葉形으로 하기 때문에 '荷葉墩'이라고도 하였다. <도.17>은 현재 남아 있는 다양한 駝峯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本 『營造法式』에서의 駝峯은 우리나라 건축에서의 花盤과 같은 부재로 보기 쉽다. 그러나 花盤은 "창방위 중간에 없어 주심도리 밑 장혀를 받는 초새김한 받침"(張起仁, 『韓國建築大系Ⅳ-韓國建築辭典』, p.121, 서울;보성문화사, 1991) 또는 "상하가로계를 연결하는 장식화된 판부재이며 받침으로도 쓰인다."(朴基善, 『韓國木造建築의 花盤에 관한 研究』, p.14, 高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93. 7.) 등으로 정의되고 있어 구조적인 측면에서 駝峯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보 위에 花盤을 놓고 도리, 장혀나 종보, 보아지를 받게 한 동자주"를 의미하는 '花盤童子(柱)'(張起仁, 『전계서』, p.123)가 駝峯과 비슷한 부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花盤이나 花盤童子는 형태에 있어서 駝峯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시대적인 차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존하는 우리나라 건축 중에서 本 『營造法式』과 시기적으로 비슷한 鳳停寺 極樂殿의 大樑위에 사용된 伏花盤만이 구조적인 측면이나 형태적인 측면에서 駝峯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도.18>. 日本에서는 '駝峯'을 '蟻股'라 부르고 있다.

58) 즉 10分이다.

59) 駝峯과 같이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부재 상면의 양쪽 모서리 부분 만곡된 면을 '肩'이라 하는데, 우리말의 어깨에 해당하는 용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하 본고에서는 '어깨부분'이라는 말로 번역하도록 한다.

60) 부재 외부의 윤곽을 깎아 장식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외부로 볼록한 하나 또는 여러개의 연속된 곡선을 만들어 내부로는 뾰족하게 한 것을 '入瓣'이라 하며, 그 곡선 한 단을 '1入瓣'이라 한다. (1-2. <栱>條의 註52) 및 <도.17> 참조)

61) 부재 외부의 윤곽을 깎아 장식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안으로 오목한 하나 또는 여러개의 연속된 곡선을 만들어 외부로는 뾰족하게 한 것을 '出瓣'이라 한다. (1-2. <栱>條의 註52) 및 <도.17> 참조)

62) 駝峯에 있어서 아래쪽의 넓은 부분을 말한다.

63) 보, 地栱(하인방) 등 수평재의 돌출된 머리 부분을 '入瓣' 또는 '兩卷瓣'으로 처리한 경우, 이 머리부분을 '切几頭'라 한다.

64) 襜間은 도리 아래에 도리방향으로 놓여 이웃한 蜀柱(童子柱 또는 童子臺工)나 駝峯을 연결시켜 가구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한다. 襜間은 각 도리칸에 모두 설치하는 경우와 한 칸 건너 하나씩 설치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건축에서 童子나 臺工 사이를 건너지르는 '뜯장혀' 또는 '뜯장방'에 해당하는 부재라 할 수 있다. 襜間에 대해서는 뒤의 <侏儒柱> 항목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65) 방형단면의 角材를 이용하여 正方形, 長方形 또는 多角形으로 격자를 짜고, 이 위를 판재로 덮고 여기에 단청 등으로 장식한 천장을 平基라 하는데, 격자를 구성한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또한 平基와 비슷한 것으로 '平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방형의 격자가 平基에 비해 매우 작다는 차이를 보일 뿐 平基와 뚜렷히 구분되는 차이는 없다. 清代에는 平基로 된 천장을 '天花'라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건축의 '우물천장'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물천장은 平基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66) 여기에서는 앞에서 徹上明造로 하는 경우와 상반되게 천장을 가설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67) 앞의 註65) 참조.

68) 大型殿堂의 鋪作위 柱心線上에 횡방향(도리방향)으로 설치하여 草栱을 받고 도리방향의 기둥선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부재를 '壓槽方'이라 한다<도.10>.(1-6.<總鋪作次序>條의 <도.7~11> 참조)

69) 1-6. <總鋪作次序>條의 註54,55) 및 <도.7~11>참조.

70) '丁栱'은 건물의 측면 外陳部에 사용되는 보의 일종으로, 보의 한쪽은 건물 측면 外陳柱上의 鋪作위에 놓이고(外陳柱위에 직접 놓이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쪽은 檼檐위에 놓인다. 평면상 檼檐과 결구되는 부분이 '丁'字型을 이루기 때문에 丁栱이라 하는 것이다. 淸式의 '順爬梁'과 비슷하며, 우리의 '衝樑'에 해당하는 부재로 볼 수 있다.

71) 건물의 모서리에서 추녀(角梁)와 직각을 이루도록 놓여 추녀의 후미를 받고, 건물 모서리의 가구를 결속시켜 보강해 주는 기능을 하는 보의 일종으로 淸式에서는 '抹角梁'이라 하였다. 우리나라 건축의 '귀잡이보'와 비슷한 부재라 할 수 있다.

크기는 材와 같고 길이는 간살(間廣)을 따르도록 한다. 매 架의 아래에는 平基方 하나씩을 엮는다. 平圍의 구성도 이와 같다. 또 架를 따라서 椽⁸¹⁾서 까래를 엮고 遮版⁸²⁾으로 덮는다. 이 서까래는 殿宇인 경우에 높이를 2寸5分⁸³⁾, 폭을 1寸5分으로 하며, 기타 건물에서는 높이를 2寸2分, 폭을 1寸2分으로 한다. 이 部材의 단면이 작은 경우에는 적당히 加減한다. 絞井口⁸⁴⁾는 모두 補間을 따른다. 縱橫의 分布는 정방형으로 한다. 峻脚⁸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격자안 상부에 版을 깔고 장식한다. 平圍인 경우에는 峻脚椽⁸⁶⁾을 사용하는데, 그 단면의 크기는 모두 平圍椽⁸⁷⁾과 같게 한다.

이상 本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의 단면 크기를 정리하여 <표.1>에 나타내었다.

<표.1> 『營造法式』의 각종 보에 대한 단면 규정

보의 종류	椽架	鋪作	보의 형식 및 노출 여부			
			直梁(?)	草椽	明椽	徹上明造
檐椽	3椽架	-	-	-	-	42分°
	4椽架	4~8鋪作	42分°	45分°	42分°	50分°
	5椽架					55分°
	6椽架	4~8鋪作	60分°	60分°		최대 60分°
	7椽架					
8椽架						
乳椽	大梁과 마주 대하는 위치		大梁과 동일한 높이		42分°	42分°
	3椽架	4.5鋪作	36分°	30分°		
		6鋪作 이상	42分°	42分°		
2椽架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筵牽	1椽架	4~8	出跳	30分°	左에 준함	35分°
	2椽架	鋪作	不出跳	21分°이하	左에 준함	
平梁	2椽架	4.5鋪作		30分°	규정 없음	4椽·6椽 이상 : 35分°
		6鋪作 이상		36分°	규정 없음	8椽·10椽 이상 : 42分°
廳堂梁椽	3椽架	-	30分°	-	-	-
	4椽架	-	36分°이하	-	-	-
	5椽架	-	-	-	-	-
기타 건물	서까래의 架數에 따라 加減					-

- 72) 팔작이나 우진각지붕으로 된 건물에 있어서 건물 모서리에 45°방향으로 경사지게 걸어 사용하는 보의 일종으로 '陽馬'라고도 한다. 角梁은 두개를 아래 위로 중첩시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의 큰 것을 '大角梁', 위의 큰 것을 '子角梁'이라 한다. 角梁은 우리나라의 '추녀'에 해당하며, 大角梁과 子角梁은 각각 우리나라의 '추녀'와 '사래'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또한 角梁에는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를 비롯한 角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뒤의 <陽馬>條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73) 外陳隅柱와 內陣隅柱 사이의 明梁 위, 大角梁 아래에 위치하며, 角梁과 중첩시켜 사용하는 草椽의 일종이다.
- 74) "內至角後椽項"이라는 문장에 대해 梁思成은 "이 의미는 불명확한데, 오류가 있었던지 글을 빠뜨렸는지 의문이다."라고 하였다(梁思成, 『전계서』, p.152).
- 75) 枋棋에서 좌두위에 좌두와 평행하게 놓인 부재로 檼檼方과 각종 素方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부재이다. 把頭絞項造와 枋口跳를 제외한 모든 鋪作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부재중의 하나이다. 정확한 사용위치에 대해서는 1-6. <總鋪作次序>條의 <도.7~11>을 참조.
- 76) 뒤의 註(80) 참조.
- 77) 托脚은 상하의 도리 사이에 경사지게 놓여 도리 사이를 서로 결속시켜주는 구실을 하는 부재이다. 그런데 이 托脚은 後代로 내려올수록 점차 단면이 줄어들어 그 구조적 기능이 감소하는 변화를 겪는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鳳停寺 極樂殿에서 이러한 托脚의 수법이 보이고 있어<도.18>, 고려시대의 건축과 당시 중국건축 사이의 관계성이 주목된다.
- 78) 여기에서 矮柱는 보위에 놓여 상부의 보나 도리를 받는 짧은 기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말의 '童子臺工'이나 '童子柱'를 말하는 것이다.
- 79) 原文의 '敦木忝'에서 '木忝'은 字典에 보이지 않는 글자로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문맥상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80) 明椽 상부에 놓여 平基를 받는 방향의 부재이다. 정확한 사용위치에 대해서는 1-2. <棋>條의 <도.1>을 참조.
- 81) 여기에서는 서까래가 아니라 平基方을 사용하여 만든 커다란 격자 속에 다시 조그마한 격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 縱橫으로 배열하는 방형단면의 부재, 즉 平基椽을 말하는 것이다.
- 82) 平基椽위에 깔아 놓는 版을 말한다.
- 83) 여기의 分은 상대치수가 아닌 절대치수 단위이다.
- 84) 梁思成은 "'井口'는 椽을 사용하여 平基方과 더불어 구성되는 격자이다. '絞'는 동사로 椽이 平基方과 서로 교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營造法式註釋卷上』, p.153). 그러나 絞井口는 平基方에 의하여 매 칸마다 平基椽을 걸기 위해 구성되는 커다란 격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해석될 때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이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85) 平基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86) 平圍를 경사지게 설치하는 경우에 平圍를 받기 위해 경사지게 놓는 방형단면의 부재이다.
- 87) 平圍를 구성하기 위해 격자형으로 구성하는 방형단면의 부재이다.